

[서식 예] 답변서(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일신전속권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00가단000 매매대금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워인에 대한 답변

- 1.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는데, 피고가 20○○. ○. 소외 ●●●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기에, 소외 ●●●을 대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통해 증여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2. 대법원은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과 같이 비록 행사



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지만 이를 행사하면 그로써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등으로 권리자 본인이 그로 인한 법률관계 형성의 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미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의 증여 계약의 승낙의 경우에도 성질상 그 권리의 행사를 채무자인 소외 ◉◉◎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0. 0.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보선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면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대53789 판결). ·용소관할(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면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3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면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면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관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의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임(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관결).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급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집(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